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건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071

발의연월일: 2024. 9. 19.

발 의 자:윤건영・박지원・이기헌

신정훈 · 조계원 · 박선원

서영석 · 김영배 · 김병기

송기헌 · 노종면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는 중앙정부 부처는 물론 지방정부의 행정복지센터에 이르 기까지 각 기관 소속 직원의 성명직위·부서·주요업무를 기관별 홈 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그러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소속 직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타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생활과 직무공정성 등을 이유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.

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영국, 독일 등은 백악관 및 총리실 소속 직원의 성명·직위 등을 공개하고 있고, 심지어 미국은 소속 직원의 연봉까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이에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성명·직위·부서· 주요업무를 공개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합니다(안 제9조제1항제6호마목 신설).

법률 제 호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1항제6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의 성명·직위·부서 ·주요업무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제9조(비공개 대상 정보) ① 공공 | 제9조(비공개 대상 정보) ① | | | |
| 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는 | | | | |
| 공개 대상이 된다. 다만, 다음 | | | | |
|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| | | | |
|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 | | | | |
| 다. | <u>.</u> | | | |
| 1. ~ 5. (생 략) | 1. ~ 5. (현행과 같음) | | | |
| 6.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| 6 | | | |
| 성명 • 주민등록번호 등 「개 | | | | |
| 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 | | | | |
| 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| | | | |
|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 | | | | |
|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| | | | |
|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 각 | | | | |
|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 | | | | |
| 다. | | | | |
| 가. ~ 라. (생 략) |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 | | | |
| <u><신 설></u> | <u>마.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</u> | | | |
| | 보실 소속 공무원의 성명 | | | |
| | <u>•직위•부서•주요업무</u> | | | |
| <u>마.</u> (생 략) | <u>바.</u> (현행 마목과 같음) | | | |
| 7.・8. (생 략) | 7.・8. (현행과 같음) | | | |
| ② ~ ④ (생 략) |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| | | |